법 무 부

법무 2303- 1978 (503-7031) 1987. 2. 23.

수신 서울시 광화문 사서함 391 김 건 영귀하

제목 외국어 번역문 인증 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

1. 1987. 2. 7 정부합동민원실을 경유하여 당부에 이첩된 외국어번역문 인증효력에 관한 질의와 관련입니다.

2. 외국어 번역문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등을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그 번역자가 자신이 이를 번역하였음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,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, 외국어번역문이 진정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.

인증의 효력에 관하여 더 알고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내방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.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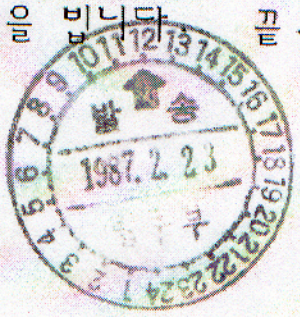

법 무 부 장 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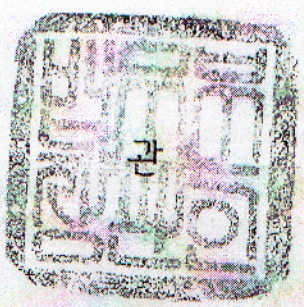

법무실장 전결